

보도시점 2026. 8. 14.(금) 12:00 배포 2026. 8. 14.(금)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 MSCI 로드맵 39개 과제 중 30건 완료, ‘실제 투자 불편 해소’에 집중
- 「e-FX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상주인력 없이도 24시간 안정적인 외환거래 지원
- 결제촉진대금을 전면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원화 부담 완화
-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 가능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14(금)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하여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하였으며, 관계기관은 금년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참고1)

금일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과제로 ①24시간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e-FX* 가이드라인 배포, ②증권결제 원화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방안 및 ③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참고2)

*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주문체결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외환거래

아울러, 참석자들은 향후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 및 투자자 지적사항의 해소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 확인된 애로사항은 「MSCI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이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후속 제도개선 내용 >

제도개선	주요 내용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e-FX 가이드라인 배포	▶ 금융기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 외환거래시 준수해야할 시스템안정성·내부통제 등 기준 배포(8월) (18참고3)
결제촉진대금 개선을 통한 증권 결제 유동성 부담 완화	▶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이외에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하도록 허용(9월), 장내시장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10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운영	▶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운영을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 등 개정(8~9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27년 시행

다음으로 참석자들은 7월 6일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외환시장의 거래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거래량도 24시간 운영 전에 비해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심야시간대 거래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 해외와의 시차 등의 이유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관계기관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시 심야시간 거래량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내은행이 심야에 거래할 유인을 높이기로 하였다.

* 은행간시장 현물환 거래량(일평균): (‘26.上) 173.9억불 → (연장 이후) 191.4억불(+10.1%)

** 제도 개요: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국내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외환 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2년 도입)

*** 가중치(예시): (06:00~18:00) 1배 (18:00~22:00) 2배 (22:00~^{T+1}06:00) 3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내 주가 급등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하였다. 허 차관은 금년 2분기말 기준 코스피가 1분기말 대비 68% 상승(5,052 포인트 → 8,476 포인트)함에 따라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석자들도 순대외금융자산 감소는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차입 확대 등 펀더멘털 악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관계기관들은 향후에도 대외자산·부채의 구성과 대외지급 능력 관련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홍석찬 (hsc1006@korea.kr)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정민종 (belljeong@korea.kr)
	국제금융국 와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백누리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0bb@korea.kr)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groundback@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민규 (02-759-5737)
		담당자	과 장	김성기 (sk.kim@bok.or.kr)
	국제국 외환시장팀	책임자	팀 장	백봉현 (02-759-5967)
		담당자	과 장	김진미 (jmkim@bok.or.kr)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책임자	팀 장	곽원섭 (02-3145-7922)
		담당자	수 석	이상훈 (sanhonlee@fss.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3774-8580)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ijoo@krx.co.kr)
<예탁결제원>	청산결제본부 청산결제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519-1710)
		담당자	팀 장	최종현 (cjh78@ksd.or.kr)

참고 1

MSCI 로드맵 과제별 이행현황

※ 이행완료 : ●

과제명	부처 · 기관	시기
1. 외환시장 선진화		
①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중개시스템(SMB, KMB) 24시간 운영 전환	재경부·한은	● (‘26.7월 完)
•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매매기준율(MAR) 산정방식 및 시장 유지 필요성 검토·개선	재경부·한은· 금감원	● (‘26.8월 完)
•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재경부·한은	지속
② 역외 원화결제 제도 구축		
• 역외 원화결제기관 제도 도입 ※ 필요조치사항 : 라이선스 부여 기준, 관련 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면제 등 외환법령상 근거 마련	재경부·한은	‘26.9월 시범운영 ·
• 24시간 운영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SWIFT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ISO 20022 도입	재경부·한은	‘27년 정식시행
③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 · 제도 정비		
•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폐지 검토	재경부	● (‘26.6월 完)
• 비거주자의 원화연계 외화증권 관련 규제 개선	재경부	● (‘26.3월 完)
•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고·업무체계 정비, 중복 신고 일원화	재경부	‘26년
• 국내-글로벌 외국환중개사 업무연계 허용범위 구체화	재경부	● (‘26.1월 完)
④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 ※ 필요조치사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CBM 가이드라인 개정 등		
• RFI 등록 간소화 방안 마련	재경부·한은	● (‘26.6월 完)
• 신규 RFI 3개월 보고유예, 보고 준비 조기 착수 지원	재경부·한은	● (‘26.1월 完)
• 제재 기준 및 방법 세분화, 보고 기한 및 조치 절차 정비	재경부·한은	● (‘26.6월 完)

과제명	부처 · 기관	시기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 · 결제 체계 마련		
①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명목계좌 글로벌 수탁은행(GC)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 필요조치사항 : 실명법 유권해석은 로드맵 발표로 같음, 특금법은 별도 유권해석 배포	금융위	● ('26.2월 完)
명목계좌 펀드별 개별결제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 개편	예탁원	● ('26.4월 完)
외국인통합계좌 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 폐지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	● ('26.1월 完)
외국인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월→분기)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금감원	● ('26.3월 完)
② 거래 · 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예탁원	'27년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해, 1단계 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시장참여자 협의) 2단계 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 명확화	재경부·한은	● ('26.2월 完)
일시적 원화차입 활용 실태조사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재경부·한은	● ('26.3월 完)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①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		
전환계획 홍보 및 전환신청 사전 수요조사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 ('26.3월 完)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 下
LEI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식별번호를 전환	금융위·금감원 은행·금투업권	'26. 下
②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 · 수단 개선		
일정 요건 下 위임장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일정요건 下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등 ※ 필요조치사항 : 비대면 금융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일정요건 下 해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대면 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은행연	● ('26.2월 完)
LEI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예탁원 지침·약관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금융위 은행연·예탁원	● ('26.4월 完)

과제명	부처 · 기관	시기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및 세칙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1월 完)
5. 영문 정보공시 개선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 제출기한 단축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1월 完)
(의무화 3단계) 공시항목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하고, 코스닥 대형사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거래소	'27.3월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거래소	● ('26.4월 完)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금감원	● ('26.1월 完)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금감원	~'28.1Q
-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5사) *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거래소	● ('26.1월 完)
6. 현물이체 · 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영문본 포함)	금융위·금감원	● ('26.4월 完)
-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금감원	● ('26.4월 完)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 배당절차 개선여부·계획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 개선시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 ※ 필요조치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가치 제고계획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	금융위·거래소	● ('26.3월 完)
- 공시우수법인 평가가점 부여('26년 공시실적 바탕 → '27년부터 수상)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 개정	거래소	● ('26.3월 完)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거래소	● ('26.2월 完)
Eurex, 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거래소	● ('26.3월 完)

참고 2

외국인 투자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후속 제도개선

① 24시간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e-FX 가이드라인 마련(8월)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업무 편의 제고, 야간시간대 거래 확대를 위해 e-FX 가이드라인 마련
 - e-FX 거래시 기본원칙, e-FX 거래 시스템 안정성·시장변동성 대응 등 내부통제 기준 등 제시
- 은행·증권사가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

☞ (기대효과) 상주인력 없이 안정적인 외환거래가 가능해져 금융기관의 인력·비용 부담 완화, 야간 외환거래 활성화

② 결제촉진대금 제도 전면 개선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 허용(9월)
- 결제일의 장내시장 결제를 통해 수령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하여 결제촉진대금 납부없이 증권 先인수 허용(10월)

☞ (기대효과)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줄여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 원화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

③ 원화 국제 결제망(‘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운영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계좌 개설 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이체하고 국내 증권결제 등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 등록절차·요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등을 개정(8~9월), 9월중 시범운영 및 ‘27년 정식 시행

☞ (기대효과) 해외에서의 원화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

참고 3

e-FX 거래 개념 및 현황

- **(개념)**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주문체결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외시협 행동규범 용어집 中 Electronic Trading Platform 개요 참고

- **(현황)** 과거 전화·채팅 등을 통한 '보이스거래'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단말기로 전자주문을 체결하는 'e-FX 거래'가 대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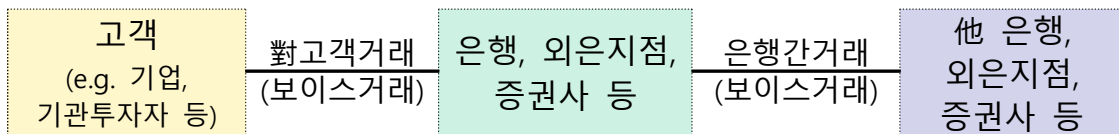
- 은행간 거래의 경우 e-FX 거래 플랫폼*이 정착

* 프라이머리 베뉴(primary venue)로 지칭(예: SMB, K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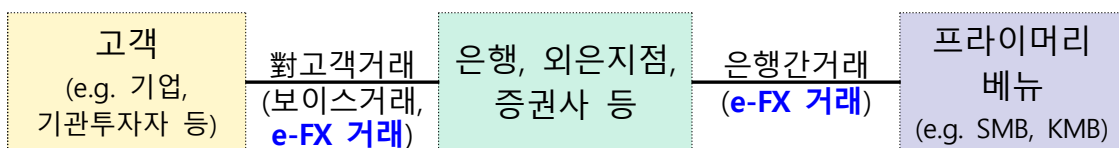
- 이에 더해, 최근 대형은행·외은지점·증권사 등은 對고객 거래에서도 e-FX 거래 도입 중(대고객외국환중개업, 어그리게이터)

* 글로벌 시장에서는 對고객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구성된 전자 플랫폼인 세컨더리 베뉴(secondary venue)가 발전(예: FxOne)

< 과거 : 보이스거래 중심 >



< 현재 : e-FX 거래 플랫폼 구축 중 >



< e-FX 플랫폼 개요 >

	은행간거래	對고객거래	
		MDP (Multi-Dealer Platform)	SDP (Single-Dealer Platform)
특징	고객의 주문을 바탕으로 여러 은행·증권사 등이 참여하여 상호 거래	여러 은행·증권사 등이 참여하여 고객과 거래	각 은행·증권사 등이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고객과 거래
플랫폼	- 서울외국환중개(SMB) - 한국자금중개(KMB)	- FxOne	- 우리WON FX - KDB e-FX Pro